[전산양식 A5100]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타경(타채, 타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대상처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주의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1항의 항고이유서 또는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130조 제4항).